

행복한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75인(남·여)

- 1) 일반실: 68명
- 2) 치매전담실 '가'형 1실: 7명

2. 모집방법

- 1). 홍보 및 입소 상담에 의한 모집
 - 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 우선 모집
 - 나. 보호자를 통한 모집
 - 다. 홈페이지 및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를 통한 모집
 - 라. 관련 기관을 통한 모집
- 2) 입소대상자
 - 가. 장기요양등급 1~5 등급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 입소대상자 또는 등급 외 본인 부담 전액 대상자
 - 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및 대상자 : 행복한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2)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3)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

우는 그렇지 아니다.)

-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나. 입소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2)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3)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라. 기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 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4.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입소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나.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다. 기관 내의 개인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다. 모든 어르신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마.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아.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의무: 입소자에 대하여 신원인수인을 주계약자(보호자)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1) 신원인수인은 계약체결에 의해 “을”이 “갑”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 2)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3)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4) 인적 사항, 신원인수인의 변경, 주소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5)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6)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7) 입소자의 외출, 외박은 주 계약자의 동의가 필수이며 원장(시설장)의 동의해야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본인 일부 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 비용을 산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시한다.
- 2) 이 항에 대한 근거는 붙임 자료를 1부 첨부한다.
- 3)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 가.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의 비용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 나. 상급 침실이용료의 비용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 다. 입원 및 통원 치료 시 발생하는 의료비는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 라. 특별 보호 시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 마. 시설에서 제공하나 본인이 원하는 물품과 상이할 경우 입소자가 원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 4) 장기요양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 가. 입소 비용 : 붙임자료의 3등급 기준
- 5)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가. 비급여
 -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기타 추가로 발생하는 급여를 말하며, 비급여 부분은 전액 입소자(보호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나. 비급여 항목 외 실비납부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납부 해야 한다.

8. 이용료의 납부 방법

1)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입소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이용료는 선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 비용을 시설은 사전에 계상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매월 5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한다.)

※ 계좌번호 : (수협) 0004-1532-4567, 주식회사 행복한요양원

다.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라. 입소자(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9.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 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1)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라. 입소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 절차

1)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 시행(갱신, 등급변경 등) → 보호자상담 → 재계약

2) 수가 변경에 따른 수가 인상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1)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10.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입소 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 욕을 고취시킨다.

라. 신체 재활서비스: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른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 재활서비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바. 여가활동 서비스: 다양한 여가 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기능회복훈련: 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신체기능의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기능프로그램, 여가·정서프로그램, 사회회적응훈련, 가족대상프로그램, 물리(작업)치료

사. 위생관리 서비스: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 기타 : 응급서비스,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세탁물 관리

2) 비용의 부담: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3) 본 시설에서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간식비, 상급침실료)에 대한 비용만 산정한다. 단, 개인 의료비, 요실금 언더웨어, 개별 요구사항 물품 및 개인기호간식(영양식)은 본인이 부담한다.

11. 특별한 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의사의 소견을 들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가. 저혈당 증세가 보일 경우

나. 혈압이 불안정한 경우(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규칙한 어르신)

다. 천식 증세가 악화 되는 경우

라. 간질 •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마.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바. 심한 우울증세가 있는 경우

아. 심장질환이 나타날 경우

자.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자에게 발생할 경우 보호자 합의하고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 처리할 수 있다.

2) 비용의 부담: 특별 보호 시 별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12. 특별한 보호: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클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는다. 불가피할 경우 전화로 사전 상담을 후 동의를 얻은 다음에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는다.

라.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안전을 위한 보호대를 의미하며, 신체 보호대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 보호,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 보호,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보호 등 직접적인 신체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마. 3인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 의료 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실 상급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라.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식,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1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 절차

- 1)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 2)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원장(시설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원장(시설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4) 입소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14.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12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협약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한다.
- 2)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 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 후 귀원한다.

15.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16. 계약 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1) 계약의 해지 및 종료

가. 시설의 계약 해지

시설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고할 있다.

- ①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②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③ 입소자가 제삼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 ④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나. 입소자의 계약 해지(유선 통보도 가능하며, 퇴소 전 퇴소신청서를 제출한다.)

- ①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 시간을 두어 입소자(또는 보호자)이 정한 퇴소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 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 ② 입소자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생활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 ③ 입소자가 계약 해지를 기관에 알리지 않고 생활실을 퇴소 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기관이 퇴소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다. 계약의 종료

- ①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자의 계약 종료 희망 시
- ② 시설이 계약 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③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라. 퇴소 조치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 ①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 ②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
- ③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④ 기타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마.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바. 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제공 중에 본 시설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입소자(또는 보호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요양원은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삼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설이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외출이나 외박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한 문제(상해 및 사망 등)와 시설의 고의가 아닌 사고 (질병 악화, 의료행위 거부 등)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 하등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

<시설물사용>

- ①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침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입소자(또는 보호자)은 행정상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침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 ③ 시설은 입소자(또는 보호자)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을”은 그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④ 시설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할 수 없을 때는 입소자(또는 보호자)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

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 분쟁해결방법

장기요양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입소자(또는 보호자)과 시설의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2025년 행복한요양원 요양비

등급/수가	본인부담율	급여일수	본인부담금	식간식비	요양비합계	비고
1등급 (90,450원) 2.1:1	20%	28	506,520	336,000	842,520	상급침실료 (30일기준) 1인실 330,000원 (11,000원/일) 2인실 180,000원 (6,000원/일) 식비 10,500원/일 (3,500원/끼) 간식비 1,500원/일
		30	542,700	360,000	902,700	
		31	560,790	372,000	932,790	
	12%	28	303,910	336,000	639,910	
		30	325,620	360,000	685,620	
		31	336,470	372,000	708,470	
	8%	28	202,610	336,000	538,610	
		30	217,080	360,000	577,080	
		31	224,320	372,000	596,320	
2등급 (83,910원) 2.1:1	20%	28	469,900	336,000	805,900	
		30	503,460	360,000	863,460	
		31	520,240	372,000	892,240	
	12%	28	281,940	336,000	617,940	
		30	302,080	360,000	662,080	
		31	312,150	372,000	684,150	
	8%	28	187,960	336,000	523,960	
		30	201,380	360,000	561,380	
		31	208,100	372,000	580,100	
3-5등급 (79,240원) 2.1:1	20%	28	443,740	336,000	779,740	
		30	475,440	360,000	835,440	
		31	491,290	372,000	863,290	
	12%	28	266,250	336,000	602,250	
		30	285,260	360,000	645,260	
		31	294,770	372,000	666,770	
	8%	28	177,500	336,000	513,500	
		30	190,180	360,000	550,180	
		31	196,520	372,000	568,520	